【 감사기간 : 2019. 11. 18. ~ 11. 29. (10일간) 】

2019 본청 자체감사 결과

【 주민복지과, 재무과, 경제과, 도시교통과 】

청렴韓세상

기획감사실

- 목 차 -

Ⅰ. 감사개요 및 결과

Ⅱ. 처분계획

· 행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Ⅲ. 주요 지적사항

Ⅳ. 감사 처분요구서

Ⅰ. 감사개요 및 결과

감 사 개 요

○ 감사대상부서 : 주민복지과, 재무과, 경제과, 도시교통과

○ 감 사 구 분 : 2019 본청 자체감사

○ 감 사 기 간 : 2019. 11. 18. ~ 11. 29.(10일간)

○ 대 상 기 간 : 2016. 12. ~ 2019. 10.

○ 감 사 대 상 : 자치사무 위주

감 사 결 과

□ 총 지적건수 : 24건

※ 주민복지과 7, 재무과 4, 경제과 8, 도시교통과 5

○ 행정상 조치 : 24건 (주의 19, 시정5)

○ 재정상 조치 : 3건 9,861,550원

· 감 액 : 2건 7,704,000원

· 추 징 : 1건 2,157,550원

Ⅱ. 처분계획

행정상 조치

번호	담당부서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1	주민복지과	시정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소홀
2		주의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3		주의	화장 장려금 지급 소홀
4		주의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5		시정	긴급복지지원 업무 추진 소홀
6		주의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7		주의	초과근무 사후명령 소홀
8	재무과	주의	물품관리 휴대용 리더기 대체구입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9		시정 (추징 2,157천원)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10		주의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11		주의	초과근무 사후명령 소홀

번호	담당부서	조치구분	지 적 사 항
12	경제과	주의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소홀
13		주의	옥천종합상가 태양광설치공사 간선전기공사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14		시정 (감액 1,126천원)	농공단지 차선도색공사 설계 소홀
15		주의	민원사무 처리결과 통지 소홀
16		주의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17		주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모집공고 일모아 시스템 등록 소홀
18		주의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19		주의	초과근무 사후명령 소홀
20	도시교통과	주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업무 소홀
21		주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소홀
22		시정 (감액 6,578천원)	동안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설계 소홀
23		주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소홀
24		주의	초과근무 사후명령 소홀

재정상 조치

구 분	제 목	금 액 (단위 : 원)	비 고
총 계	3건	9,861,550	
감액	소 계 (2건)	7,704,000	
	농공단지 차선도색공사 설계 소홀	1,126,000	
	동안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설계 소홀	6,578,000	
추징	소 계 (1건)	2,157,550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2,157,550	

Ⅲ. 주요지적사항

(1)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생활보장위원회)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징수제외·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

○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8조, 제37조. 「2018~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지침」에 의거 **연간 2회 이상 대면 심의로 진행하여야 하고,**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은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1월에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 지역실태에 따른 보장 확대를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소위원회는 ①**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②**소위원회 운영세칙을 만들고** ③**위원장을 지명**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사후에 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반대 의견으로 의결할 경우, **본위원회의 반대 의결시점부터 소위원회 결정은 무효가 됨**

- 그러나 주민복지과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생활보장위원회 본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이 없었으며, 소위원회 운영세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 대면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대면 회의를 단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지침 제13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함

○ 또한,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주민복지과에서는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전기공사), 경제과에서는 옥천종합상가 태양광설치공사 간선전기공사에 대한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관급자재수불부를 제출받지 않고, 보완 지시 없이 준공처리하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화장 장려금 지급 소홀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르면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고,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주민복지과에서는 2019년에 349명에게 화장 장려금 지급하면서 **지급 사실 통보를 누락**하였으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화장 장려금을 최대 14일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 화장 장려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지방재정법」제32조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주민복지과와 경제과에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정산보고서를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제출 받거나**, 보조사업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검사를 바로 실시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정산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5) 긴급복지지원 업무 추진 소홀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여한 가구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이용시설, 교육지원 등) 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 사업임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따라 긴급지원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장(군수)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고,**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긴급지원사업안내」에 의거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해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지원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적정성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생활보장 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은 반드시 사후 본위원회의 보고하여 의결처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주민복지과에서는 긴급지원 건 심의를 위하여 ①**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②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정당하게 대신할 수 있도록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감사일 현재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미구성**하였으며,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 긴급지원 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긴급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청백-e시스템'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옥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7조(업무지정)에 따르면 청백-e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실무부서에서는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 관리,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의 담당업무를 지정하고, 실무책임자는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주민복지과, 재무과, 경제과에서는 청백-e 시스템에 대한 오류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제외 또는 조치 후 승인절차를 이행해야함에도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적기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우리군 평균 적기 승인율보다 현저히 낮게 승인처리를 하는 등**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7) 초과근무 사후명령 소홀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 제5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Ⅵ. 초과근무수당 등, 8.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주민복지과, 재무과, 경제과, 도시교통과에서는 **초과근무 사후명령 시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누락**하거나, **초과근무 사후명령을 지연**하여 결재한 사실이 있음

(8) 물품관리 휴대용 리더기 대체구입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호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를 받아야 하고

○ 제5조(심사요청)규정에 의하면 발주부서의 장은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의 원가심사를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 재무과에서는 물품관리(RFID) 휴대용 리더기 대체구입을 추진하면서 옥천군 계약심사부서에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를 득하고 물품구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계약심사를 득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심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9)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 재무과에서는 회계관직 직인을 날인한 옥천군 명의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개설하여 각종 보관금·보증금 등을 보관·관리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제80조제4항에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 같은 규칙 제80조제6항에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무과에서는 반환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 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는 정당한 권리자를 찾아 반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함

- 그러나 재무과에서는 ①제269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1.), ②재무과-23506호(2019.7.5.), ③재무과-37127호(2019.10.31.)를 통해 반환기한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반환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였음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총 6건(2,157,550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후속조치(세입조치)하지 않고 있는 등**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현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0)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에 따르면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하며 청렴서약서 작성예시를 규정하고 있고,「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경제과에서는 **태양광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제출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11) 농공단지 차선도색공사 외 1건 설계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 농공단지 차선도색공사 설계 소홀 사항

○ 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차선도색공사를 **건설 대표 ***과 2019. 10. 28. 도급계약하고, 2019. 10. 31. 착수하여 2019. 12. 9. 준공예정에 있어서,

- 농공단지 차선도색 구간의 동이농공단지구역 백색실선 528m가 타사업의 인도설치공사와 중복 반영되었고, **사업물량 중복으로 과다 계상된 1,126천원(제경비 포함)상당 공사비에 대하여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동안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설계 소홀

○ 도시교통과에서 농공단지 차선도색공사를 ㈜** 대표 ***과 2018. 11. 19일 도급계약하고, 2018. 11. 23일 착수하여 2020. 01. 19일 준공예정에 있어서,

- 동안리 도시계획도로 구역의 빗물배수를 위하여 주철제 우수받이(1000×400×400) 46개소를 설계에 계상되었으나, 공사 현장과는 부적합하게 규격이 과다한 제품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공사 현장여건에 맞게 우수받이 규격을 1000×400×400에서 500×400×400으로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과다 계상된 6,578천원(도급액 475천원, 관급액6,103천원) 상당 공사비에 대하여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2) 민원사무 처리결과 통지 소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기타 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경제과에서는 옥천군 옥천읍 *** 14, ****(주) ****가 신청한 공장등록 승인 신청에 대한 취하원을 접수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 등** 민원사무 처리결과 통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13)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모집공고 일모아시스템 등록 소홀

○ 일모아시스템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행정전산망으로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담당자들은 일자리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하여 일모아 시스템을 통하여 월별 집행실적을 관리하고 참여자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르면 사업공고 및 참여자 모집 시 일모아시스템에 사업정보를 등록하고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일모아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하고, 등록된 모집공고는 취업포탈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게시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 경제과에서는 직접일자리사업 모집공고를 시스템에 등록함에 있어 2018~2019년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희망일자리사업 등 **총 18건의 사업에 대하여 접수마감일 이후에 등록하거나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미등록 하는 등** 직접일자리사업 모집공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4)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소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교육의 위탁 등)에 따르면 군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교육 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조례 제28조 제2항을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매년 3월 말까지 교육의 실시시기, 내용, 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도시교통과에서는 교육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매년 2월말까지 제출받아야 하는 교육계획서를 최대 6개월(2017.9.7.)이 지나 제출**받았으며,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함에도 **2017년~2018년에 공고한 사실이 없는 등**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교육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기준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면 원가계산의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하고,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 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도시교통과에서는 옥천읍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계약수량의 산출근거가 명시된 **원가계산서(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작성 없이 수의계약 당사자의 1개 업체 견적서만을 적용하여 상기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있음

(16)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소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서는 임대주택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제57조에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

○ 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강화와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주택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도시교통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임대주택조정위원회를 설치·구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Ⅳ. 처분요구서

【 No 1】 감사자 이문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주민복지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소홀
〔 현 황 〕

연도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실적	생활보장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실적	생활보장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실적	비 고
2017	11회	1회(2017.12.26.) (2017년 소위원회 의결사항)	-	
2018	10회	-	-	
2019	11회	1회(2019.1.30.) (2018년 소위원회 의결사항)	-	

【위법부당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생활보장위원회)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징수제외·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

○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8조, 제37조. 「2018~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지침」에 의거 **연간 2회 이상 대면 심의로 진행하여야 하고,**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계획은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년 1월에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 지역실태에 따른 보장 확대를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소위원회는 **①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②소위원회 운영세칙을 만들고 ③위원장을 지명**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사후에 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반대 의견으로 의결할 경우, **본위원회의 반대 의결시점부터 소위원회 결정은 무효가 됨**

- 그러나 주민복지과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생활보장위원회 본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이 없었으며, 소위원회 운영세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 대면회의를 매년 2회 개최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대면 회의를 단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주민복지과장은 생활보장위원회를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고,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2】 감사자 김광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주민복지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 현 황 〕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금액 (도급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신축 공사(전기공사)	16,639	2017.4.26	2017.5.2	2017.5.29	****(주) ***	

【위법부당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지침 제13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함

○ 또한,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주민복지과에서는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전기공사)에 대한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관급자재수불부를 제출받지 않고, 보완 지시 없이 준공처리 하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주민복지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3】 감사자 조진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주민복지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화장 장려금 지급 소홀
〔 현 황 〕

◎ [표 1]화장 장려금 지급 현황 (2019.1.1.~2019.11.1.)

연도	지급인원	지급지연건수	지급통보 여부	비고
2019	349명	15건	부	

◎ [표 2]화장 장려금 지연 입금 내역

연번	화장 장려금 신청인			화장 장려금 신청서 접수일 (공문접수일)	화장 장려금 지급일자 (지급결의일)	지연일
	성명	생년월일	사망자와 관계			
	15건					
1	***	1962.**.**	자녀	2019-03-19	2019-04-19	4일
2	***	1933.**.**	배우자	2019-03-21	2019-04-19	2일
3	***	1937.**.**	손자	2019-04-01	2019-05-02	4일
4	***	1967.**.**	자녀	2019-05-02	2019-06-04	4일
5	***	1967.**.**	며느리	2019-05-28	2019-06-28	4일
6	***	1974.**.**	자녀	2019-05-29	2019-06-28	3일

연번	화장 장려금 신청인			화장 장려금 신청서 접수일 (공문접수일)	화장 장려금 지급일자 (지급결의일)	지연일
	성명	생년월일	사망자와 관계			
7	***	1941.**.**	자녀	2019-05-29	2019-06-28	3일
8	***	1952.**.**	부모	2019-05-30	2019-06-28	2일
9	***	1942.**.**	배우자	2019-05-30	2019-06-28	2일
10	***	1992.**.**	손자	2019-06-27	2019-07-29	3일
11	***	1970.**.**	자녀	2019-08-12	2019-09-10	2일
12	***	1960.**.**	자녀	2019-08-12	2019-09-10	2일
13	***	1966.**.**	자녀	2019-10-11	2019-11-27	14일
14	***	1967.**.**	자부	2019-10-25	2019-11-27	4일
15	***	1967.**.**	자녀	2019-10-25	2019-11-27	4일

【위법부당내용】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르면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고,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주민복지과에서는 2019년에 349명에게 화장 장려금 지급하면서 **지급 사실 통보를 누락**하였으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화장 장려금을 최대 14일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 화장 장려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주민복지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4】 감사자 조진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주민복지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 현 황 〕

연번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종료일	정산보고서 제출일	정산보고일
	11건				
1	2017년 노인교육원 교육경비 지원	***	**2017. 04. 25.**	**2017. 07. 10.**	**2018. 02. 26.**
2	2017년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	***	2017. 05. 15.	**2017. 07. 10.**	**2018. 02. 26.**
3	2017년 게이트볼대회 출전지원	***	2017. 09. 28.	**2017. 11. 22.**	**2018. 02. 26.**
4	2017년 그라운드골프 경진대회 출전지원	***	2017. 09. 28.	**2017. 11. 22.**	**2018. 02. 26.**
5	2017년 이웃사랑나눔 알뜰바자회 행사지원	***	**2017. 05. 11.**	**2017. 11. 01.**	2017. 11. 13.
6	2017년 여성지도자 교육지원	***	**2017. 05. 31.**	**2017. 11. 01.**	2017. 11. 13.
7	2017년 보육사업 추진-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군비]	***	**2017. 03. 03.**	**2017. 07. 03.**	2017. 07. 12.
8	2017년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도비]	***	**2017. 03. 04.**	**2017. 07. 03.**	2017. 07. 12.

연번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종료일	정산보고서 제출일	정산보고일
9	2018년 군 양성평등 행사지원	***	**2018. 07. 24.**	**2019. 02. 27.**	2019. 03. 04.
10	2018년 이웃사랑나눔 알뜰바자회 행사지원	***	**2018. 09. 18**	**2019. 02. 27.**	2019. 03. 04.
11	2018년 여성지도자 교육지원	***	**2018. 06. 22.**	**2019. 02. 27.**	2019. 03. 04.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제32조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교육원 교육경비 지원 사업 외 8건에 대하여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최대 8개월이 지나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노인교육원 교육경비 지원 사업 외 3건의 경우 **정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3개월에서 최대 7개월이 지나 정산검사를 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주민복지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5】 감사자 조진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주민복지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긴급복지지원 업무 추진 소홀
〔 현 황 〕

연도	소위원회 적정성 심의 개최 실적	본위원회 개최 실적	비고
2017	4회	-	
2018	7회	1회	
2019	8회	2회	

【위법부당내용】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여한 가구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이용시설, 교육지원 등) 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 사업임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따라 긴급지원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장(군수)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고,**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긴급지원사업안내」에 의거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해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지원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적정성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생활보장 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은 반드시 사후 본위원회의 보고하여 의결처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주민복지과에서는 긴급지원 건 심의를 위하여 ①**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②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정당하게 대신할 수 있도록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감사일 현재까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미구성**하였으며,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 긴급지원 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긴급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주민복지과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하여 주시고,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6】 감사자 박지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주민복지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 현 황 〕

대상업무	처리건수	적기 처리건수	적기 처리율 (담당자)	적기 승인건수	적기 승인율 (결재자)	비고
세외수입	27	21	77.77%	14	51.85%	

【위법부당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청백-e시스템’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옥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7조(업무지정)에 따르면 청백-e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실무부서에서는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 관리,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의 담당업무를 지정하고, 실무책임자는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주민복지과에서는 청백-e 시스템에 대한 오류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제외 또는 조치 후 승인절차를 이행해야함에도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현황과 같이 적기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우리 군 평균 적기승인율(91.7%)보다 현저히 낮은 51.85%로 확인되는 등** 청백-e시스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주민복지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7】 감사자 박지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주민복지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초과근무 사후명령 소홀
〔 현 황 〕

기 간	초과근무 사후명령 시 당직근무자 미확인	결재 지연건수	비고
2019. 1. ~ 현재	56건	17건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 제5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Ⅵ. 초과근무수당 등, 8.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주민복지과에서는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초과근무 사후명령 56건에 대하여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누락**하였고, **초과근무 사후명령 결재 시 17건에 대하여 4~28일 지연하여 결재**를 받은 등 초과근무 사후명령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주민복지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8】 감사자 이문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재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물품관리 휴대용 리더기 대체구입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 현 황 〕

(단위 : 천원)

물품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심사 요청기관	계약심사 기준액	계약심사 여부	비고
물품관리(RFID) 휴대용 리더기 대체구입	30,843	2018.1.30	옥천군	20,000	부	

【위법부당내용】

○「옥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호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를 받아야 하고

○ 제5조(심사요청)규정에 의하면 발주부서의 장은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의 원가심사를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 재무과에서는 물품관리(RFID) 휴대용 리더기 대체구입을 추진하면서 옥천군 계약심사부서에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검토를 위한 **계약심사를 득하고 물품구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계약심사를 득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심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재무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9】 감사자 조진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 2,157,550원

〔 제 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 현 황 〕

(단위 : 원)

연번	수납일	적요	납부자	반환기일	금액	세입조치 여 부	비고
		6건			2,157,550		
1	2013-07-22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	2014-07-31	220,000	부	
2	2012-07-26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	2014-08-30	210,000	부	
3	2011-08-31	옥천공설시장 사용보증금	***	2014-08-31	492,750	부	
4	2009-11-18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	2014-09-30	351,000	부	
5	2011-10-14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	2014-09-30	487,200	부	
6	2011-01-19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	2014-10-30	396,600	부	

【위법부당내용】

○ 재무과에서는 회계관직 직인을 날인한 옥천군 명의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개설하여 각종 보관금·보증금 등을 보관·관리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제80조제4항에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 같은 규칙 제80조제6항에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무과에서는 반환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 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는 정당한 권리자를 찾아 반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함

- 그러나 재무과에서는 ①제269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1.), ②재무과-23506호(2019.7.5.), ③재무과-37127호(2019.10.31.)를 통해 반환기한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반환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였음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총 6건(2,157,550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후속조치(세입조치)하지 않고 있는 등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재무과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입세출외현금 6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를 하시고,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0】 감사자 박지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재무과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 제 목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 현 황 〕

대상업무	처리건수	적기 처리건수	**적기 처리율 (담당자)**	적기 승인건수	**적기 승인율 (결재자)**	비고
지방세	100	55	**55%**	84	**84%**	
세외수입	7	7	100%	5	**71.43%**	

【위법부당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청백-e시스템’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옥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7조(업무지정)에 따르면 청백-e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실무부서에서는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 관리,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의 담당업무를 지정하고, 실무책임자는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재무과에서는 청백-e 시스템에 대한 오류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제외 또는 조치 후 승인절차를 이행해야함에도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현황과 같이 적기 처리 및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우리 군 평균 적기처리율(93.4%), 적기승인율(91.7%)보다 현저히 낮은 적기처리율 55%, 적기승인율 71.43%로 확인**되는 등 청백-e시스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재무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1 】 감사자 박지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재무과
〔행정상 조치〕주의
〔재정상 조치〕없음
〔 제 목 〕초과근무 사후명령 소홀
〔 현 황 〕

결재일	초과근무일	초과근무 사후명령 시 당직자확인여부	결재지연일
2018.1.4.	2018.1.2	부	
2018.1.8.	2018.1.7	부	
2018.1.9.	2018.1.8	부	
2018.1.15	2018.1.9.~1.12.	부	3
2018.1.19	2018.1.18.	부	
2018.1.30	2018.1.28.~1.29	부	
2018.2.5.	2018.2.2.~2.3.	부	
2018.2.6.	2018.2.5	부	
2018.2.28	2018.2.27.	부	
2018.3.2.	2018.3.1.	부	
2018.3.6.	2018.3.2.	부	
2018.4.3.	2018.3.10	부	22
2018.3.14	2018.3.13	부	
2018.4.23	2018.4.22	부	
2018.4.25.	2018.4.24	부	
2018.5.9.	2018.5.8.	부	
2018.5.21	2018.5.20	부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 제5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Ⅵ. 초과근무수당 등, 8.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재무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초과근무 사후명령 시 17건에 대하여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누락**하였고, **초과근무 사후명령 시 2건에 대하여 각 3일, 22일 지연하여 결재**를 받은 등 초과근무 사후명령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재무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2 】 감사자 이문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경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소홀

〔 현 황 〕

연번	사 업 명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여부	비고
1	2018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부	
2	2018년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지원	부	
3	2018년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지원	부	
4	2018년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지원	부	
5	2018년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설치지원	부	
6	2018년 마을단위 태양광 설치지원	부	
7	2019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	부	
8	2019년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지원	부	
9	2019년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지원	부	
10	2019년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지원	부	

【위법부당내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에 따르면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하며 청렴서약서 작성예시를 규정하고 있고,「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경제과에서는 **태양광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제출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경제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3 】 감사자 김광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경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옥천종합상가 태양광설치공사 간선전기공사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 현 황 〕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금액 (도급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옥천종합상가 태양광설치공사 간선전기공사	16,639	2017.4.26	2017.5.2	2017.5.29	****(주) * * *	

【위법부당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지침 제131조(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함

○ 또한,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경제과에서는 옥천종합상가 태양광설치공사 간선전기공사에 대한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관급자재수불부를 제출받지 않고, 보완 지시 없이 준공처리 하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경제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4 】 감사자 김광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경제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 1,126천원

〔 제 목 〕 농공단지 차선도색공사 설계 소홀

〔 현 황 〕

○ 위 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구일리 외 5개소 일원

○ 공 사 비 : 27,008천원(도급액16,677천원, 관급액10,331천원)

○ 사 업 량 : 차선도색 6개소

○ 계 약 일 : 2019. 10. 28

○ 사업기간 : 2019. 10. 31 ~ 2019. 12. 9.

○ 도 급 자 : **건설 * * *

○ 현 공 정 : 80%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

방법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차선도색공사를 **건설 대표 ***과 2019. 10. 28. 도급계약하고, 2019. 10. 31. 착수하여 2019. 12. 9. 준공예정에 있어서,

- 농공단지 차선도색 구간의 동이농공단지구역 백색실선 528m가 타사업의 인도설치공사와 중복 반영되었고, 사업물량 중복으로 **과다 계상된 1,126천원(제경비 포함)상당 공사비에 대하여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경제과장은 농공단지 차선도색공사에 대하여 과다 계상된 1,126천원을 감액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5 】 감사자 김광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경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민원사무 처리결과 통지 소홀

〔 현 황 〕

민 원 명	민원인	접수일자	처리기한	비 고
공장등록 승인 신청 취하원	***	2018. 4. 6.	2018. 4. 7.	

【위법부당내용】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기타 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경제과에서는 옥천군 옥천읍 **길, ***가 신청한 공장등록 승인 신청에 대한 취하원을 접수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 등** 민원사무 처리결과 통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경제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6 】 감사자 조진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경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 현 황 〕

연번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비(천원)			사업 종료일	정산보고서 제출일	정산 보고일
			계	보조	자담			
1	옥천군 노동조합 연합대회 행사지원	***	4,330	4,000	330	2016. 12. 6.	**2016. 12. 23.**	**2017. 4. 17.**
2	옥천군 노동조합 지역공동체 캠페인	***	4,000	4,000	-	2017. 12. 15.	**2017. 12. 28.**	**2018. 7. 20.**
3	옥천군 노동조합 지역공동체 캠페인	***	4,000	4,000	-	2018. 11. 20.	**2018. 11. 27.**	**2019. 8. 12.**
4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용 지원	***	92,400	74,000	18,400	**2018. 12. 31.**	**2019. 5. 22.**	2019. 5. 23.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제32조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제과에서는「옥천군 노동조합 연합대회 행사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최대 8개월이 지나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용 지원 사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5개월이 지나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경제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7】 감사자 박지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경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모집공고 일모아시스템 등록 소홀

〔 현 황 〕

연번	사 업 명	공고·접수 마감일	일모아시스템 등록일	비고
1	2018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2017-12-08	2018-05-18	
2	2018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2018-03-09	2018-03-13	
3	2018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2018-06-08	2018-06-08	
4	2018년 제1단계 청년희망일자리사업	2017-12-08	2018-05-18	
5	2018년 제2단계 청년희망일자리사업	2018-03-09	2018-03-15	
6	2018년 제3단계 청년희망일자리사업	2018-06-08	2018-06-08	
7	2018년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참여자 모집	2018-10-12	2018-10-12	
8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18-01-12	2018-01-15	
9	2019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2018-12-05	2018-12-05	
10	2019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2019-03-13	2019-03-12	
11	2019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2019-09-09	2019-09-09	
12	2019년 제1단계 청년희망일자리사업	2018-12-11	2018-12-11	

연번	사 업 명	공고·접수 마감일	일모아시스템 등록일	비고
13	2019년 제2단계 청년희망일자리사업	2019-03-12	2019-03-12	
14	2019년 제3단계 청년희망일자리사업	2019-06-26	2019-06-26	
15	2019년 제4단계 청년희망일자리사업	2019-09-09	2019-09-09	
16	2019년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참여자 모집	2019-02-25	2019-02-25	
17	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19-01-30	2019-01-30	
18	2019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19-06-26	2019-06-25	

【위법부당내용】

○ 일모아시스템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행정전산망으로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담당자들은 일자리사업의 총괄 관리를 위하여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월별 집행실적을 관리하고 참여자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르면 사업공고 및 참여자 모집 시 일모아시스템에 사업정보를 등록하고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일모아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하고, 등록된 모집공고는 취업포탈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게시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 경제과에서는 직접일자리사업 모집공고를 시스템에 등록함에 있어 2018~2019년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희망일자리사업 등 총 **18건의 사업에 대하여 접수마감일 이후에 등록하거나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미등록 하는 등** 직접일자리사업 모집공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경제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8 】 감사자 박지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경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 현 황 〕

대상업무	처리건수	적기 처리건수	적기 처리율 (담당자)	적기 승인건수	적기 승인율 (결재자)	비고
세외수입	13	13	100%	7	53.85%	

【위법부당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청백-e시스템’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며,

○「옥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7조(업무지정)에 따르면 청백-e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실무부서에서는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 관리,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의 담당업무를 지정하고, 실무책임자는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경제과에서는 청백-e 시스템에 대한 오류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제외 또는 조치 후 승인절차를 이행해야함에도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현황과 같이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우리군 평균 적기승인율(91.7%)보다 현저히 낮은 53.85%로 확인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경제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19】 감사자 박지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경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초과근무 사후명령 소홀

〔 현 황 〕

결재일	초과근무일	당직자확인여부	결재지연일
2019. 1. 2.	1. 1.	부	-
2019. 1. 18.	1. 17.	부	-
2019. 2. 6.	1. 27.	부	10
2019. 2. 7.	1. 29.	부	8
2019. 2. 11.	2. 10.	부	-
2019. 4. 2.	3. 12. / 3. 23.	여	20 / 9
2019. 5. 28.	5. 21.	여	6
2019. 6. 26.	6. 4. / 6. 6. / 6. 16.	여	21 / 19 / 9
2019. 7. 12.	7. 11.	부	-
2019. 8. 1.	7. 2. / 7. 4. / 7. 25. / 7. 26.	여	29 / 25 / 6 / 5
2019. 9. 30.	9. 5.	부	24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 제5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Ⅵ. 초과근무수당 등, 8.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경제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초과근무 사후명령 시 7건에 대하여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누락**하였고, **초과근무 사후명령 시 5~29일 지연하여 결재**를 받은 등 초과근무 사후명령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경제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20 】 감사자 이문식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도시교통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교육업무 소홀

〔 현 황 〕

구분	수탁자 교육계획서 제출 여부	교육계획서 제출일 (제출기한 : **매년 2월말**)	교육계획 공고 여부 (매년 3월말)	비고
2017년	유	**2017. 09. 07.**	**무**	
2018년	유	**2018. 03. 26.**	**무**	
2019년	유	**2019. 03. 25.**	유	

【위법부당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교육의 위탁 등)에 따르면 군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교육 위탁을 받은 자는 같은 조례 제28조 제2항을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매년 3월 말까지 교육의 실시시기, 내용, 시간 및 장소, 교육 대상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도시교통과에서는 교육 위탁을 받은 자로부터 **매년 2월말까지 제출받아야 하는 교육계획서를 최대 6개월(2017.9.7.)이 지나 제출**받았으며,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함에도 **2017년~2018년에 공고한 사실이 없는 등**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교육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도시교통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21 】 감사자 김광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도시교통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소홀

〔 현 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자	비고
옥천읍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4,000	2019.9.18	2019.9.20	2018.9.20	* * * *㈜ * * *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기준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면 원가계산의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하고,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 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도시교통과에서는 옥천읍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계약수량의 산출근거가 명시된 **원가계산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등) 작성 없이 수의계약 당사자의 1개 업체 견적서만을 적용하여 상기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도시교통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22 】 감사자 김광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도시교통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 6,578천원

〔 제 목 〕 동안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설계 소홀

〔 현 황 〕

○ 위 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일원

○ 공 사 비 : 624,047천원(도급액363,385천원, 관급액260,662천원)

○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L=431m

○ 계 약 일 : 2018. 11. 19

○ 사업기간 : 2018. 11. 23 ~ 2020. 01. 19

○ 도 급 자 : (주)** * * *

○ 현 공 정 : 80%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도시교통과에서 농공단지 차선도색공사를 ㈜** ***과 2018. 11. 19일 도급계약하고, 2018. 11. 23일 착수하여 2020. 01. 19일 준공예정에 있어서,

- 동안리 도시계획도로 구역의 빗물배수를 위하여 주철제 우수받이(1000×400×400) 46개소를 설계에 계상되었으나, 공사 현장과는 부적합하게 규격이 과다한 제품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공사 현장여건에 맞게 우수받이 규격을 1000×400×400에서 500×400×400으로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도**과다 계상된 6,578천원(도급액 475천원, 관급액6,103천원) 상당 공사비에 대하여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도시교통과장은 동안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과다 계상된 6,578천원을 감액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23 】 감사자 조진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도시교통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소홀

〔 현 황 〕 임대사업자의 옥천군내 임대주택 현황(2019.11.28. 등록기준)

임대주택 유형 / 임대주택 종류	총계	아파트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	단독 (다중주택 포함)	비 고
총계	336	206	32	29	69	
단기(4년), 매입(5년)	259	155	31	29	44	
장기(8년)	77	51	1	-	25	

【위법부당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서는 임대주택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제57조에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

○ 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강화와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주택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도시교통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임대주택조정위원회를 설치·구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도시교통과장은 임대주택조정위워회를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구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24 】 감사자 박지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9. 11. 18. ~ 11. 29.(10일간)까지 실시한 2019년 본청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옥천군 감사반장 전 재 수 (인)

〔부 서 명〕 도시교통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 제 목 〕 초과근무 사후명령 소홀
〔 현 황 〕

기 간	초과근무 사후명령 시 당직근무자 미확인	결재 지연건수	비고
2019. 1. ~ 현재	57건	4건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 제5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Ⅵ. 초과근무수당 등, 8.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도시교통과에서는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초과근무 사후명령 57건에 대하여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누락**하였고, **초과근무 사후명령 결재 시 4건에 대하여 최대 24일을 지연하여 결재**를 받은 등 초과근무 사후명령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도시교통과장은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